

제588차 기술용역타당성 심사결과

- 건 명 : 강서수도사업소 청사 정밀안전진단용역
- 심 사 일 : 2015. 4. 20.
- 요청부서 : 강서수도사업소(행정지원과)
- 사업개요
 - 용역비 : 60,115천원
 - 용역기간 : 계약일로부터 90일
 - 사업규모 : 지하1층, 지상5층 / 연면적 3,111.47㎡

심사결과 : 적 정(조건부)

| 심 사 항 목 | 심 사 내 용 |
|---|---|
| 1. 용역의 필요성 (자체시행 47개 공종대상여부) <input type="checkbox"/> 대 상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미대상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청사 등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내부 균열이 심화되어 건축시설 전반에 대한 기능적, 구조적 안전성 평가 및 보수 보강 방안 등의 도출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용역으로 전문업체에 의한 용역의 필요성이 있음. 알림 : 주요 공종이 자체시행대상 용역인 경우 원칙적으로 발주부서 자체추진 |
| 2.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- 개략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- 소요 기술인력 산정의 적정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용역비 조정 60,115천원 → 57,057천원 (3,058천원 감액 5.0%) - 주기적 점검(관리)에 따른 추가 보정(0.95) |
| 3. 조건부여 이행 확인사항 - 용역성과품공개,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심의절차이행 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타당성심사 결과를 반영한 최종 설계내역서와 과업내용서는 용역발주 전에 기술용역 관리시스템(타당성심사)에 등록하여 심사업무가 종결될 수 있도록 조치 |
| 4. 과업의 내용, 범위의 적정성 등 기타 검토의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본 용역의 특수성을 감안 대가조정이 필요한 경우 적정대가를 적용하고 용역수행 과정에서 용역비 집행 및 정산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. ○ 용역 시행과정에서 담당공무원 및 용역참여기술자간 합동회의를 주기적으로 추진할 것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용역 특성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공정추진사항 합동검토 (행정2부시장방침 제301호, '14.10.13.) ○ 점검결과 보수·보강이 필요한 경우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|
| 5. 리스크 관리항목 적정성 - 용역지연·중단요인의 관리대책 적정성 - 용역비 증가요인의 관리대책 적정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용역발주시 명확한 과업범위를 제시하여 용역수행중 과업범위 변경 등으로 인한 용역비 증가를 최소화 하기 바람. |

[기술용역 추진시 사전 확인사항]

| 확인항목 | | 세부내용 |
|-------------|--|---|
| 용역시스템 | 1. 기술용역관리시스템에 추가(첨부) 등록 | - 용역발주 전 최종 수정된 설계내역서 및 과업내용서를 기술용역관리 시스템에 추가 등록 ※ 기술심사담당관-600호(13.1.14) : 용역관리 시스템 개선 |
| 입찰전 | 2.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- 심의절차 이행 -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| - 발주부서는 개별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기준을 입찰 시행전에 반드시 건설기술 심의절차 이행 · 단, 서울시 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과 모든사항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심사 담당관과 사전 서면 협의로 건설기술심의 대체 ※ 건설기술진흥법 제19조에 의한 기술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기관은 제외(기술자문위원회에서 심의 절차 등 이행) |
| 심사 및 심의전 확인 | 3. 유관부서 의견수렴 - 사업계획 수립시 TF팀 구성 등 관련부서 참여여부 확인 | - 기술용역타당성심사 및 건설기술심의 요청 전 유지관리부서 및 관련(유관)부서 의견 조회 등 의견수렴 · 사업계획 수립 시 계획부서, 공사부서, 유지관리부서 등 TF팀 구성운영하여 계획단계부터 사업참여 유도 · 유지관리부서 선정여부 등 유지관리방안의 적정성 검토 ※ 행정2부시장 방침 제73호(13.5.22) : 준공예정시설물 점검관련 매뉴얼 작성 |
| 타당성조사용역 | 4. 타당성조사 용역시 과업내용서 반영사항 | - 재원조달방안 및 사업의 타당성 재검증 범위 검토 · 타당성조사 용역 수행시 재원조달방안 및 타당성 재검증 검토 시행 |
| 용역준공시 | 5.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이행절차 - 성과품공개 및 자료제공 - 정보소통광장 등록 철저히이행 | - 발주부서는 '13.7.1부터 준공되는 모든 기술용역 성과품에 대해 정보소통광장 (http://opengov.seoul.go.kr) 등록 및 서울도서관에 제출 · 용역보고서 : PDF파일 변환하여 정보소통광장에 등록(준공시) · 전체성과품 : 인쇄본 3부 및 CD 1부 서울도서관 제출(준공시) →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시 '국가중요시설 및 보안목표시설' 등 국가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성과품은 반드시 비공개할 것(용역준공시 용역사 보유 성과품 파기) ※ 시장방침 제35호(13.5.24) :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 및 관리방안 |
| 설계시 | 6.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건설기술 용역 추진시 - 지장물 확인절차 - 지장물로 인한 설계변경 최소화 | - 공사구간내 또는 인접구간의 지하매설물도는 우리시 (통합공간정보 서비스)내 지장물 현황과 비교 검토 · 아울러 지반조사, 현황 측량시에도 수치지형도를 최대한 이용 |
| 내진 | 7. 내진대상 시설물 내진설계 반영 여부 | - 모든 공공건축물(규모관계 없이) 및 지진재해대책법에서 정한 국가하천 수문, 교량·터널 등의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시 내진설계를 반영 ※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 작성확인절차(구조기술사) |